

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5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1월 1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의회 공공 시설에 대한 시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회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공간의 “사용”의 범위를 넓힘(안 제2조제4호).
- 나.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(안 제6조제4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공연”을 “공연, 전시,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는”을 “자격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사용”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, 교육, 강연회, 세미나, 토론회, <u>공연</u>,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6조(사용자격)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<u>자</u>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</p> <p>1.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<u>자</u></p> <p>2.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·학교 등에 재직·재학 중인 <u>자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그 밖에 의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공연</u>, <u>전시</u>, ----- 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사용자격) ----- ----- <u>자격은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사람</u></p> <p>2.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</u></p>